

교직원 보수 규정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19. 07. 22.

개정 : 2019. 12. 06.

담당 : 사무관리팀 (950-5421)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교직원의 보수)
제5조(연봉확정)	제6조(연봉의 조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보수지급일)
제13조(보수계산)	제14조(휴직기간의 보수)	제15조(해외파견 교직원의 보수)	
제16조(면직,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제17조(비전임교원의 보수)	제17조의2(강사, 전문연구원, 조교의 보수)	
제18조(겸직)	제19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제20조(겸임교원)	
제21조(외래교수)	제22조(퇴직 위로금)	제23조(공무로 인한 사망)	제25조(수당지급)
제26조(수당의 종류)	제27조(교원보직수당)	제28조(직원보직수당)	제29조(업무추진비)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제31조(야간근무수당)	제32조(휴일 근무수당)	제33조(강의수당)
제34조(크리스마스수당)	제34조의2(입시업무수당)	제34조의3(기타수당)	제34조의4(포상금)
제35조(계약체결)	제36조(계약기간)	제37조(재계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와 교원인사규정 제9장 제 51조, 직원인사규정 제8장 제63조에 의거하여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2.20)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계약직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개정2014.02.20).

②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6.12.01)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기본연봉은 전년도 지급된 연봉액으로 전년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초임인 경우 최초 연봉계약에 의한 연봉액을 말한다.(개정2014.02.20)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 액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5. 연봉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2014. 2. 20)

제2장 보수

제4조(교직원의 보수)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06.12.1)
2. 교직원의 연봉은 해당 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정한 기본 연봉과 전년도 업무 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06.12.1)
3. 교직원 중에 무보직 및 무직무자는 2항에 의한 산정 금액이 연봉액이 된다.

제3장 연봉확정

제5조(연봉확정) 본 대학교 교직원의 연봉 확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연봉 확정은 총장이 정하되,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하고 본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 액을 확정한다.
- ② 삭제(2014. 02. 20 개정)
- ③ 초임연봉은 임용 시 상호계약에 따른다.(2014.02.20 개정)

제6조(연봉의 조정) 본 대학교 교직원의 연봉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직원근무평정 결과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14.02.20개정)
- ② 휴직, 정직 또는 직위 해제중인 자가 복직할 때의 연봉은 휴직, 정직 또는 직위 해제 직전의 연봉에 의한다.(2014. 02. 20 개정)
- ③ 삭제(2014. 02. 20 개정)

제7조 삭제(2006. 12. 1)

제8조 삭제 (2006. 12. 1)

제9조 삭제 (2006. 12. 1)

제10조 삭제 (2006. 12. 1)

제11조 삭제 (2006. 12. 1)

제4장 보수지급

제12조(보수지급일)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보수지급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5일로 한다.
2.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계산)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직원의 보수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할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 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3. 교직원이 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보수기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
5. 파면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휴직기간의 보수) 본 대학교 교직원의 휴직 기간의 월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2014.02.20).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3. 교직원이 학위취득 및 연구 목적으로 외국유학 또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수의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4.02.20)
 - 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개정2014.02.20)
 - 나.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개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개정2014.02.20).
 - 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개정2014.02.20)
 - 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직하게 되었을 때.(개정2014.02.20)

제15조(해외파견 교직원의 보수) 본 대학교 교직원의 해외파견 보수는 파견 국가의 상황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면직,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 일에 징계처분, 면직처분 일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개정2014.02.20)

제17조(비전임교원의 보수)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비전임교원의 보수지급은 당해 학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4.02.20)

제17조의2(강사, 전문연구원, 조교의 보수) 본 대학교의 강사, 전문연구원, 조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9.07.22)

제18조(겸직) 본 대학교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하되, 교내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보직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19.07.22)

제19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본 대학교 교직원이 면직 후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015.02.06)

제20조(겸임교원) 삭제 (2019.07.22)

제21조(외래교수) 삭제 (2019.07.22)

제22조(퇴직 위로금)본 대학교 교직원의 퇴직 시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로 인한 사망)

① 본대학교의 교직원이 공무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위로금과 장례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위로금 : 연봉 액의 1.5배를 지급한다.

2. 장례비 : 전체교직원 평균 연봉액의 25%를 지급한다. (개정2014.02.20)

② 기타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총장이 결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수 당

제25조(수당지급)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수당의 종류) 삭제 (2019.12.06)

제27조(교원보직수당) 본 대학교 보직 수당은 교원으로서 처, 실장, 관장, 전공주임, 학부장에 임명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수당 액은 학년도 초에 총장이 예산 범위 예산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5.02.06)

제28조(직원보직수당) 본 대학교 직원으로서 팀장 등 직책에 임명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수당액은 학년도 초에 총장이 예산 범위 예산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개정2014.02.20)(개정2015.02.06)

제29조(업무추진비) 삭제(개정2014. 02. 20)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본 대학교의 필요에 의해 총장의 지시를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외수당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12.1)(개정2014.02.20)(개정2019.02.01)

제31조(야간근무수당) 교직원이 업무의 성격상 항시 또는 수시로 야간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학년도 초에 총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따로 정한다. 별표 삭제(개정2014.02.20).

제32조(휴일 근무수당) 총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강의수당) 본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기본 주당 9시간(보직교원 6시간)을 넘을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의수당을 지급하며, 직원이 강의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34조(크리스마스수당)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매년 12월 보수지급일에 총장이 정하여 성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휴직, 연구년 중 이거나 지급일 현재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4. 9. 5)

제34조의2(입시업무수당)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다음의 입시 및 홍보업무를 수행했을 때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4. 10. 10)

1. 교교방문 및 입시설명회
2. 입시면접 및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3. 입시(수시, 정시, 편입, 추가 등) 업무
4. 기타 입시 홍보업무

제34조의3(기타수당) 학교는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9.12.06)

1.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국책사업과 교내 정책연구의 집필 및 연구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업적, 연구업적, 행정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교직원에게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학과별 책임지도 교수로 활동하는 교원에게 책임지도교수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학생의 논문지도 또는 심사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교내 각종 시험 출제 및 심사 등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의4(포상금) 장기 근속한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2019.12.06)

제6장 계 약

제35조(계약체결)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개정2014.02.20)

1. 교원은 별지 서식 1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06.12.1)
2. 직원은 별지 서식 2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06.12.1)
3.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6조(계약기간) 본 대학교의 교직원의 연봉계약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학년도 개시 이후에 임용되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학년도 말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6.12.01)(개정 2014.02.20).

제37조(재계약) 삭제(개정2014.02.20)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규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 시행 당시 계약제에 의한 교직원의 보수는 그 계약에 따른다.
4.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의 보수는 이 규정에 의거 직위, 직급 및 등급을 재심사하여 적용한다.
5. 제36조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2000학년도에 계약할 때에 총장은 직원의 전체 수를 고려하여 일부 직원의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직원의 보수는 그 계약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교원보수계약서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하 "을"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000과 교원보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적용기간) 이 계약의 적용기간은 20 년 3월 1일부터 20 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보수) "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원(₩), 급식비 원(₩), 보직수당 원(₩), 합계 일금 원(₩)으로 하고 이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금 원(₩)을 25일에 지급한다.
3. (연구비) "을"의 연구비는 연 원(₩)으로 하고 매월 일금 원(₩)을 균등 분할하여 25일에 지급한다.
4. (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한국성서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임용계약서의 임용조건과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인)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서식 2호>

직 원 보 수 계 약 서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하 "을"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000과 직원보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적용기간) 이 계약의 적용기간은 20 년 3월 1일부터 20 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보수) "을"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원(₩), 식대 원(₩), 합계 일금 원(₩)으로 하고 이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일금 원(₩)을 25일에 지급한다.
3. (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한국성서대학교 직원으로서 임용계약서의 임용조건과 학내 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적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인)
"을"	주 소			
	성 명			(인)